

사업주 위탁·자체훈련 담당자 대상 부정훈련 예방 교육



부정훈련관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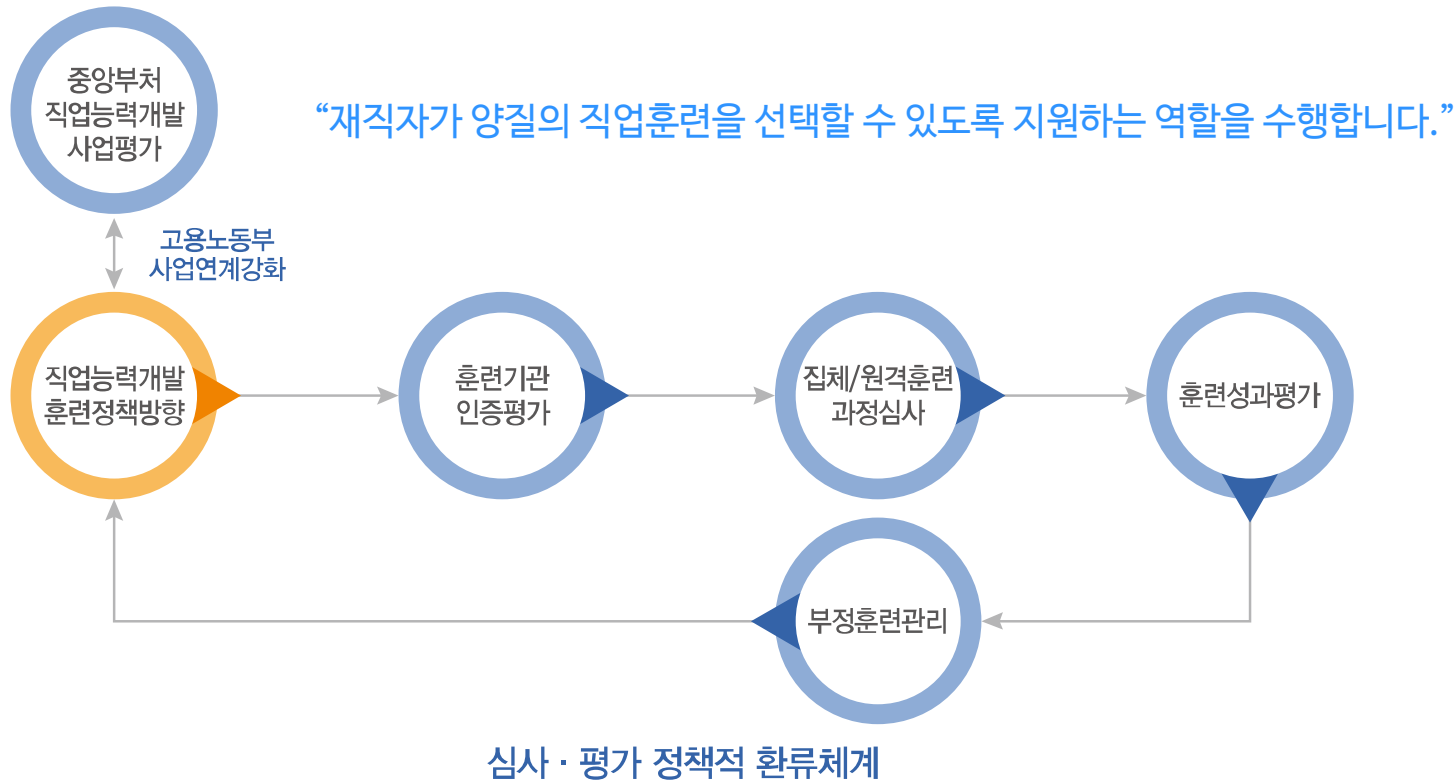
CONTENTS

1.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부정훈련관리센터 소개
2. 부정훈련관리 주요 업무
3. 부정훈련관리 관련 규정
4. 사업주 자체훈련 주요 규정 위반 유형
5. 부정훈련 주요 사례
6. 제안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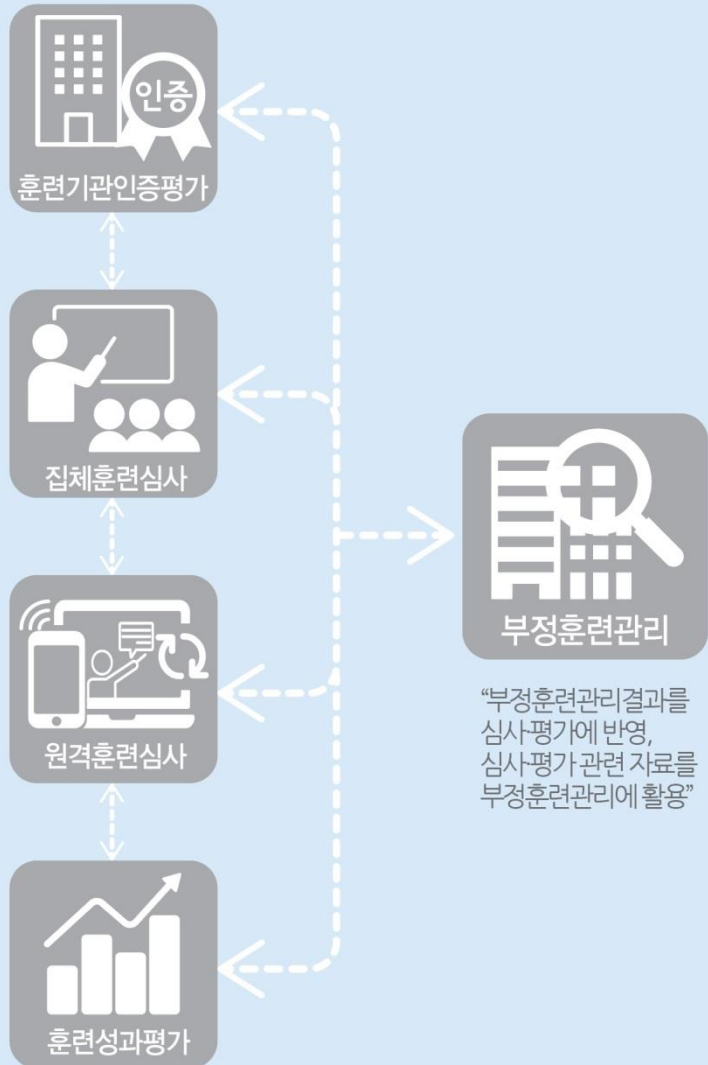
1. KSQA 부정훈련관리센터 소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 직무를 체계화·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직업훈련체계를 개편하고 심사·평가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직자와 재직자가 양질의 직업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2. 부정훈련관리 주요 업무



자료수집

HRD-Net 훈련자료, 유관기관 부정훈련 신고자료 등 수집



기관추출

데이터마이닝, 오피니언마이닝, 시나리오기법을 통해 부정훈련패턴을 분석 및 부정의심 훈련기관을 추출



지도·감독

대상 기관 심층 조사·분석 후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감독 수행



패턴보완 및 제도개선

지도·감독 결과를 토대로 부정패턴을 보완하고, 훈련기관 인증, 훈련과정 심사, 제도개선 등에 반영



교육 및 홍보

- ✓ 부정훈련 예방교육(집체, 이러닝) 실시 및 만족도조사 진행
- ✓ 홍보포스터, 사례집 제작,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활동 수행

3. 부정훈련관리 관련 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2 비용 지원용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5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용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56조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58조 지도감독 등
제63조 과태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제8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훈련과정 인정요건, 운영관리, 비용 지원 등 주요 사항 명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5)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 가)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다)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
 - 라) 그 밖에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7)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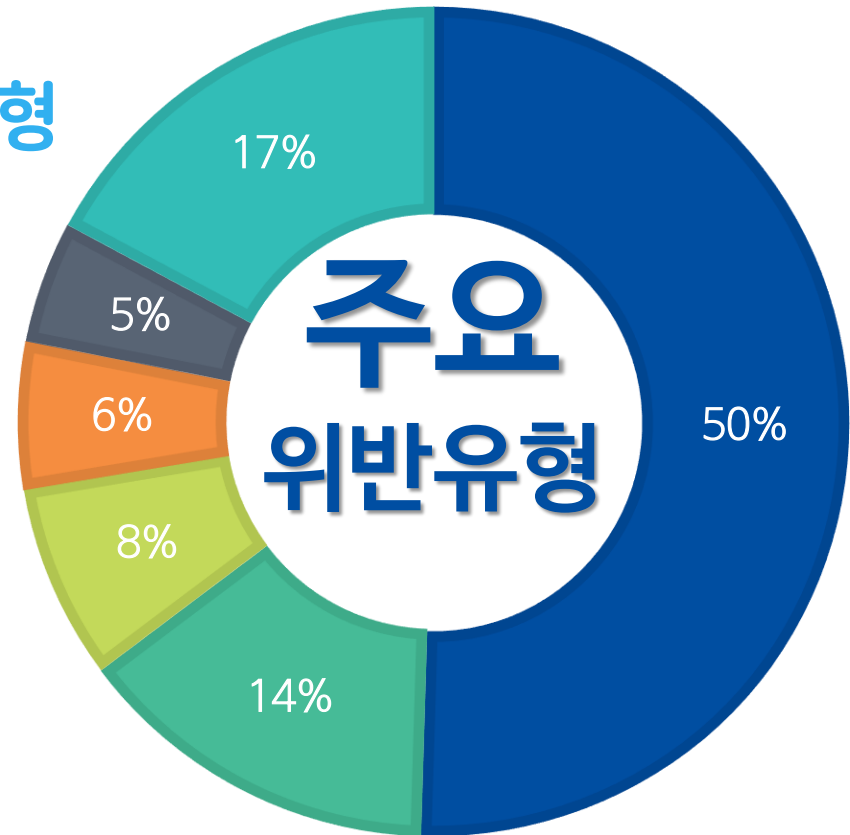
> **인정취소와 6개월~1년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4. 사업주 자체훈련 주요 규정 위반 유형

자료 없어, 삭제유무

18년도 상반기 일제점검 사업주 자체훈련 규정 위반 유형

- > 출결부정(50%)
- > 훈련내용(시간표) 미준수 (14%)
- > 훈련시간 미준수(8%)
- > 훈련 미실시(6%)
- > 훈련장소 미준수 (5%)
- > 기타 (17%)



■ 출결부정 ■ 훈련내용미준수 ■ 훈련시간미준수 ■ 훈련미실시 ■ 훈련장소 ■ 기타

사업주 자체훈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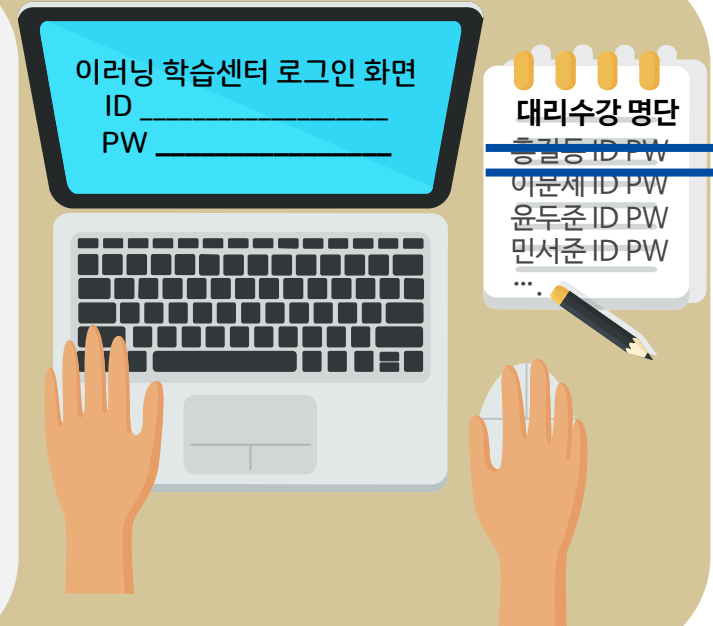
- 영업사원이 대리수강한 **출결부정** 사례
- 거짓인정으로 인정받아 인정제한분야 운영한 **훈련내용 미준수** 사례
- 회차별로 훈련내용 분할해 운영한 **훈련내용 미준수** 사례

5. 부정훈련 주요 사례

01

영업사원이 원격훈련 대리수강하는 **출결부정&부정수급**

A사업장은 **필수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훈련기관의 영업에 따라 원격훈련에 참여하게 됐으나, 외근이 잦은 업무 특성상 훈련이 진행되지 않자 G원격훈련기관의 **영업사원은 훈련생들 대신 과정을 수강**하고, 평가까지 진행한 후 훈련비를 지급받음



5. 부정훈련 주요 사례

02 거짓과정 인정받아 취미성 교육으로 운영하는 **훈련과정 허위인정**

B훈련기관은 취미성교육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신청제한분야여서 직업훈련의 과정인정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육직종**의 하나인 '**어린이집환경구성**'으로 **40시간 편성**하여 인정받고, 실제 훈련시간에는 **목공예, 가죽공예** 등의내용으로 변칙 훈련·운영함



5. 부정훈련 주요 사례

03 교과내용 분할해서 회차별로 다른 내용으로 운영하는 훈련내용 미준수

C훈련기관은 “OO과정”을 인정받은 후, 회차 별로 다른 내용으로 훈련을 운영하여 훈련생에게 동일과정을 다회수강하도록 유도하였으며, 1개월간 수강하면 훈련내용을 모두 배우는 것으로 인정받았지만 4회차를 모두 수강해야만 전체 훈련내용을 배울 수 있게 훈련과정을 분할함



사업주 자체훈련 사례

- 훈련과정 허위인정&부정수급 사례
- 훈련미실시&시간미준수 사례
- QR코드 출결부정 사례
- 훈련내용 미준수 사례
- 정원초과
- 임의변경 사례

5. 부정훈련 주요 사례

01

부정 컨설팅 업체가 주도하는 훈련과정 허위 인정 & 부정수급

OO 기업 표준인증 컨설팅 기관이 A 기업에 접근하여 FSSC22000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을 사실상 무료로 제공해주겠다고 제안하며, A기업이 실제로 실시하지도 않을 사업주 자체 훈련과정을 인정받게 한 후 허위 서류로 훈련비를 지원받아 컨설팅 비용으로 지불하도록 함



5. 부정훈련 주요 사례

02

무리한 훈련 실시계획으로 인한 **훈련 미실시 & 시간 미준수**

직원이 모두 4명인 C 치과 의원은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을 환급 받기 위해 4개월간 매주 금요일 오후(5h), 토요일(8h), 일요일(8h) 전 직원이 참여하는 훈련계획을 세워 실시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첫 주 금요일, 토요일 일부 훈련만 실시하고, 나머지 훈련을 모두 미실시함



5. 부정훈련 주요 사례

03

훈련시간에 출석체크만 하고, 실제로는 개인 업무를 수행하는 **출결부정**

W기업은 3층 회의실을 훈련장으로 등록하여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하면서, 출석 QR코드를 1층 출퇴근 입력기 옆에 비치해 놓고 훈련 시간과 관계없이 출퇴근 시 출결체크를 하게 한 후 급한 업무가 생기거나 출장 때문에 실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도 출석으로 처리함



5. 부정훈련 주요 사례

04

사업주 훈련의 목적과 다르게 훈련시간을 사용하는 **훈련내용 미준수**

M기업은 'OO전문가' 과정을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하면서, 사업주 훈련이란 사업주가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내용이든 훈련시간을 활용하여 직원들에게 전달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훈련시간을 업무 회의, 당일 업무 지시 등 인정받은 훈련 내용과 무관하게 활용

~~훈련시간: 10:00-12:00~~



사장님 지시사항전달

요즘 영업실적이
바닥인데...
다들 분발하실
필요 있구요...



5. 부정훈련 주요 사례

05

타 부처 기관 평가대비 교육 실적 증빙을 위한 **훈련 정원 초과**

F 요양원은 30명 정원의 요양기관 평가 대비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운영하면서, 타 부처에서 실시하는 요양기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가능한 많은 인원을 교육시킨 증빙자료를 남기려고 훈련 참여가 가능한 모든 직원을 참여 시켜 정원을 10명 이상 초과한 채로 훈련을 실시함

기관 평가용 사진찍게
힘들어도 쫓 참아요

숨막혀!!

30명 자리에
45명 수업을..ㅠㅠ



5. 부정훈련 주요 사례

06

훈련장소, 시간표, 교강사 등 인정내용 및 실시신고 **임의 변경**

T기업은 기업의 대표를 훈련교강사로 등록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운영하면서, 훈련교강사인 기업 **대표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훈련을 진행할 수가 없게되자** 교강사 변경신고 없이 해당 과정에 훈련생으로 등록된 직원들을 순번을 정해 훈련을 진행하도록 함



〈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과 변경사항 신고 구분〉

변경인정 불가	변경인정 사항
훈련내용, 방법, 총 훈련시간	기관명칭 및 소재지 변경, 인정받은 자 성명, 훈련과정명, 훈련시설장비, 교재, 훈련장소, 훈련교강사, 훈련일정, 상시과정 정원

변경신고 사항	
기관명칭 및 소재지 변경	관할 지부지사 변경 없는 경우
훈련장소	인정 면적 보다 같거나 넓은 경우
훈련강사	해당 회차에서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
훈련장비	인정 장비 보다 사양이 같거나 높은 경우
훈련시간표	훈련 시간, 기간에 변동이 없을 경우



임의변경

변경인정 혹은 변경신고 절차 없이 인정받은 사항과 다르게 변경하면 ‘부정’입니다.

훈련과정 운영 중 부득이한 사유로 강사, 시간표, 장소, 장비, 교재 등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지부·지사에 변경인정 신청 혹은 변경사항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결론 및 제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 1 인정받은 내용에 따라 훈련해 주세요!
- 2 출결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 3 변경 인정·신고 절차를 지켜주세요!
- 4 부정훈련 컨설팅 주의하세요!

